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0가단305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09,279원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9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 지분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목록 기재 2.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0. 7. 1. 접수 제103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1) D은 주식회사 E에 신용카드입회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이용대금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그 원리금채권은 2018. 7. 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8. 7. 23.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70356호로 D을 상대로 위 원리금채권액인 ‘13,096,105원 및 그 중 8,041,103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20. 11. 24. 기준 16,614,958원(원금 7,709,088원, 이율 연 23.7%)이 남아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과 D의 재산 상태

1) F는 2020. 4. 15.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D, 피고, H, I이 있다(D과 피고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2) 별지목록 1. 및 2. 기재 각 부동산 및 연천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은 망인 소유였는데, 2020. 6. 30.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라 한다)을 통해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0. 7. 1. 접수 제1036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현황

1)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117,933,600원 상당이고, J 토지 가액은

29,216,200원이었으며,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8,532,000원이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소극재산으로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J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진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1,432,561원, J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L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피담보채무액 8,000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는 2020. 7. 8. L에게 8,000만 원, K조합에 41,432,561원을 각 변제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703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 1. 22.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D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①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 J 토지 가액 합계 215,681,800원, ② 소극재산으로 K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41,432,561원, L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80,000,000원이 있었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M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에 위반하여 거래처의 판매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여 171,890,534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와 망인이 D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중 103,134,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20. 선고 2016나2066729 판결)이 선고되었고, 망인이 2018. 3.경 위 판결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망인과 D의 인적 관계, 변제 이후 망인이 D 또는 또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위변제 부분은 F의 D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사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한 D의 법정상속분¹⁾은 26,512,072원[= 간주상속재산(= 부동산 합계 215,681,800원 - 소극재산 121,432,561원 + D의 특별수익 51,567,160원) × D의 법정상속분 2/11]이고, 여기서 D의 특별수익 51,567,160원²⁾을 제외하면 D의 구체적 상속분은 -25,055,088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는 위와 같은 D의 구체적 상속분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지

1)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합계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 증의 가반영률을D의